

#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

## 1. 개정사유

성동구청 직장상조회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 및 현행 운영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

## 2. 주요 개정내용

### □ 정관개정

구 분	현행(구)	개정안(신)
회원자격	성동구청 산하에 재직 중인 공무원(공무직 포함)	「지방공무원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규정」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
추가대출자격	신 설	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 후에 추가대출 가능
위원변경	주민생활과장, 도시계획과장, 건설관리과장	복지정책과장, 공동주택과장, 안전관리과장
사업계획	연도 개시 전까지	다음해 1월까지
사업실적결산	3월 이내	다음해 1월까지

### □ 자금관리규정

구 분	현행(구)	개정안(신)
전산처리	마그네틱테이프에 백업 관리	전자식 저장장치 등에 백업 관리
대출대상결정	1. 소액 신청자 2. 장기 근속자	1. 신청서 접수일이 빠른 자 2. 소액 신청자 3. 장기 근속자
대출금상환	전액상환	일시에 전액상환
사업실적결산	3월 이내	다음해 1월까지

## 3.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□ 직장상조회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회원) ① 회원은 <u>성동구청 산하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</u> 으로 한다. 다만 <u>경노무직(일용직 포함)</u> 은 제외한다.	제4조(회원) ①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서 정한 <u>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</u> 으로 한다.
② (생략) 1. (생략) 2. 퇴직 3. <u>타 기관 진출 또는 입대로 인한 휴직</u>	②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2. 퇴직 또는 타 기관 진출 등 3. (삭제)
제8조(대출) ① <u>융자금의 대출 한도는 개인별 최고 3,000만 원으로 하고 100만 원 단위로 대출한다.</u>	제8조(대출) ① <u>대출 한도는-----이며-----</u> .  ----- 단, 추가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한 후에 가능하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 (생략) 3. 감사는 상조회 정관 및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연 1회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	제11조(임원의 직무) -----  ----- 1.~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 ----- ---. 단, 제22조의 결산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14조(위원 선임) (생략) 1.~2. (생략) 3. 위원(자치행정과장, 기획예산과장, 주민생활과장, 도시계획과장, 건설관리과장, 보건위생과장)	제14조(위원 선임) 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, 복지정책과장, 공동주택과장, 안전관리과장, -----
제20조(자산의 관리) 상조회장은 정관에 의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<u>선량한</u>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	제20조(자산의 관리) ----- ----- <u>성실한</u> -----.
제21조(사업계획) 상조회는 사업계획은 <u>연도 개시 전까지</u>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21조(사업계획) ----- <u>다음 해 1월까지</u> -----.
제22조(사업실적과 결산)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<u>다음 해 3월 이내</u> 에 작성하며, 감사의 결산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22조(사업실적과 결산) ----- ----- 결산은 감사의 결산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<u>다음 해 1월까지</u> 상조회장에게 -----.
제24조(결산공고) 상조회는 결산공고는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, <u>각 과.동에 문서에 의한 발송으로</u> 대신할 수 있다.	제24조(결산공고) ----- -----,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에 <u>공문발송으로</u> -----.
제26조(청산위원회) 상조회를 청산할 때에는 상조회는 재산 및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를 구보에 <u>공고</u> 한다.	제26조(청산위원회) ----- ----- -----는 <u>결산공고</u> 방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직장상조회 자금관리규정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자금관리) 자금관리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(성동구청 지점)으로 하고 성동구청 직장상조회(이하 “상조회”라 한다.)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한다.	제2조(자금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계좌</u> 를 -----.
제3조(출자금 납입, 출금) 1. 출자 1구좌 금액은 1,000원 이상으로 한다. 2.~4. (생략) 5. 출자금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12조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. 6. 퇴직 및 전출로 인한 회원 탈퇴 시 연 2%의 탈퇴 배당금을 지급한다. 다만, 회원 본인이 사망할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며, 배우자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 중(배우자가 없는 경우) 선순위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3조(출자금 납입, 출금) 1. --- <u>1계좌</u> ----- -----. 2.~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 <u>상조회 정관 제12조</u> 에 ----- -----. 6. ----- -----, ----- 사망한 경우 가족 중 1인이 출자금을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5조(전산처리) 전산입력 자료는 일계표, 잔액시산표, 출자금검산장, 대출금검산장을 출력하여 결제 보관하고, 데이터는 오류방지	제5조(전산처리) ----- -----, -----, ----- ---, ----- -----, -----

